

전라남도

2020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

용역보고서

2020. 7. 6

제 출 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본 용역보고서를 “2020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7. 6.

대 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권 장 시

목 차

용역보고서	1
I.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	3
1. 목포도시가스	3
2. 대화도시가스	4
3. 전남도시가스	5
4. 해양에너지	6
II. 공급비용 산정기준	7
1. 총칙	7
2. 적정원가의 산정	9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11
4.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13
5.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13
III.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산정내역	14
1. 목포도시가스	14
2. 대화도시가스	24
3. 전남도시가스	33
4. 해양에너지	43

IV. 용도별 공급비용	43
1. 목포도시가스	53
2. 대화도시가스	534
3. 전남도시가스	55
4. 해양에너지	56
V.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57
별첨 : 부속명세서	65

용역보고서

전라남도지사 귀하

2020년 7월 6일

폐 회계법인(이하 “법인”)은 전라남도와 체결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 계약에 따라 목포, 대화, 전남도시가스 및 해양에너지(이하 “회사”)가 2020년도에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당 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가스 회사별 총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제시

- 회사별 도시가스 총공급비용, 적정 투자보수율 및 단위당 공급비용 분석
- 용도별 판매열량, 공급비용 및 대안별 요금적용 사유

나. 도시가스 공급열량 산출 및 검토

- 승인된 추정 공급열량과 실제 공급열량의 차이 검토
- 2019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승인 공급열량과 실제 공급열량과의 차이가 $\pm 1.5\%$ 를 초과한 경우는 정산하여 2020년도 공급비용에 적용

다. 현행 공급비용에 대한 적정원가 분석 및 대안제시

- 주택용 기본요금 770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대안제시
-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2020. 3. 26)안 반영

라. 전라남도의 주택용 동일 요금제 정책의 적정성 판단

마. 정부정책 등 반영으로 인한 공급비용 안정성 확보 방안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 분석 등
- 도시지역임에도 경제성이 낮은 주택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기피에 따른 개선 대안

바. 전라남도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보급률 향상을 위한 타 시도 적용사례 조사 및 대안 제시

당 법인은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제표, 경영/산업 정보 및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대한 질문과 검토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당 법인이 수행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회사 제시 자료의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2020년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0년도에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 상의 용역 결과는 용역 기준일 이후의 적용 법규 또는 정책의 변동 등 여러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은 용역 기준일 이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본 보고서를 갱신할 책임이 없습니다.

대 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권 장 시

1.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

회사가 제시한 2020년의 추정 총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에 대한 당 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포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12,317,953	(119,148)	12,198,805	
B. 요금기저	36,311,037	(2,047,886)	34,263,151	
C. 투자보수율	7.42%	-	7.42%	
D. 투자보수	2,693,382	(151,903)	2,541,479	B×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15,011,335	(271,051)	14,740,284	A+D+E
G. 정산금액	167,658	(158,576)	9,082	
H.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미이행 조정액	-	-	-	
I.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요금 경감	299,276	-	299,276	
J. 조정 공급비용	15,478,269	(429,627)	15,048,642	F+G+H+I
K. 추정공급열량(GJ)	5,581,442	(3,966)	5,577,476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7732	(0.0751)	2.6981	J÷K

2. 대화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10,443,047	(228,238)	10,214,809	
B. 요금기저	30,921,256	(593,633)	30,327,623	
C. 투자보수율	7.13%	-	7.13%	
D. 투자보수	2,203,675	(42,307)	2,161,368	B×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12,646,722	(270,545)	12,376,177	A+D+E
G. 정산금액	(379,422)	(455,321)	(834,743)	
H.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미이행 조정액	-	-	-	
I.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요금 경감	302,746	-	302,746	
J. 조정 공급비용	12,570,046	(725,866)	11,844,180	F+G+H+I
K. 추정공급열량(GJ)	9,175,203	(101,152)	9,074,050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1.3700	(0.0647)	1.3053	J÷K

3. 전남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22,343,827	(549,899)	21,793,928	
B. 요금기저	53,336,145	(464,036)	52,872,109	
C. 투자보수율	7.48%	-	7.48%	
D. 투자보수	3,989,310	(34,708)	3,954,602	B×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26,333,137	(584,607)	25,748,530	A+D+E
G. 정산금액	(325,161)	-	(325,161)	
H.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미이행 조정액	-	-	-	
I.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요금 경감	327,829	-	327,829	
J. 조정 공급비용	26,335,804	(584,607)	25,751,197	F+G+H+I
K. 추정공급열량(GJ)	11,570,031	(70,506)	11,499,525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2762	(0.04)	2.2393	J÷K

4. 해양에너지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비 고
A. 적정원가	13,375,283	(651,824)	12,723,459	
B. 요금기저	51,666,333	(240,655)	51,425,678	
C. 투자보수율	7.57%	-	7.57%	
D. 투자보수	3,912,502	(18,224)	3,894,278	B×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17,287,785	(670,048)	16,617,737	A+D+E
G. 정산금액	513,095	19,041	532,136	
H.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미이행 조정액	-	-	-	
I.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요금 경감	187,997	-	187,997	
J. 조정 공급비용	17,988,877	(651,007)	17,337,870	F+G+H+I
K. 추정공급열량(GJ)	6,520,865	(33,793)	6,487,072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7587	(0.0860)	2.6727	J÷K

II. 공급비용 산정기준

당 법인은 대화도시가스사가 제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2020.3.26 개정) (이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1) 산정기준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 ①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원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2 이상일 경우 시·도의 여건에 따라 총평균방식 또는 개별사업자별 산정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 ⑧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수립하고 시도와 사전에 협의한 안전관리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비(배관투자 및 시설 개보수 관리)가 공급비용 승인 과정에서 임의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투자계획에 따른 투자비의 적정 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급비용을 조정 반영하여야 한다.

2) 산정기준 제 3 조 (공급비용 산정기간)

- ①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급비용 산정은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한다. 다만 공급비용 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조정일까지의 미회수 또는 초과회수된 공급비용차이를 다음연도의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반영 할 수 있다.

- ③ 공급비용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산정기준 제 4 조 (원가산정 자료)

- ① 공급비용은 외부감사를 받아 수정사항이 반영된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결산서, 요금 계산을 위한 제반 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수의계약으로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 동일한 기관이 3년 연속 공급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공급비용 산정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외부전문기관은 적정원가와 투자보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⑥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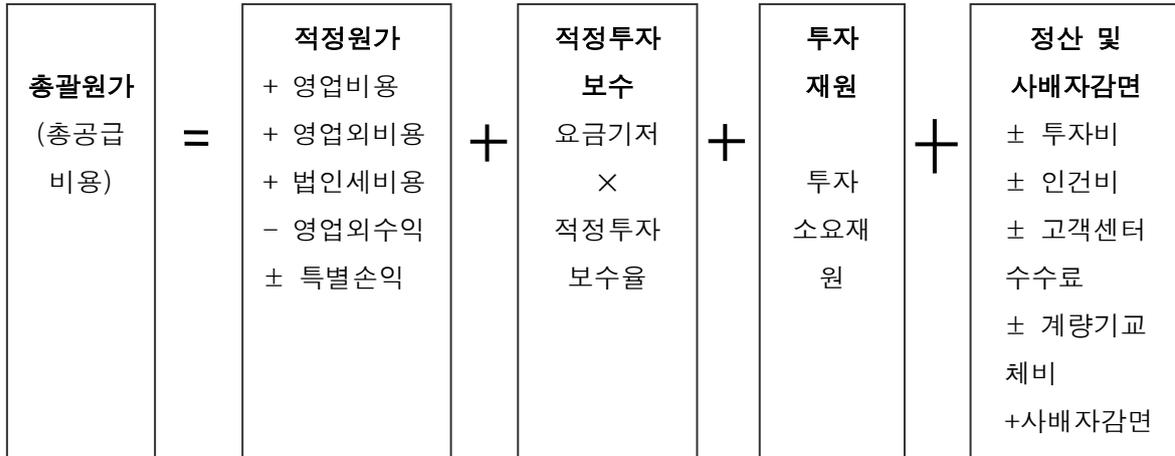
4) 산정기준 제 5 조 (판매열량)

공급비용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열량은 산정기간 중 집계가 완료되는 회사별 판매 실적 물량, 과거3개년 평균판매물량을 이용한 잔여기간 추정물량 및 도시가스사업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공고하는 공사계획을 고려한 당기 신규물량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다만, 산업용의 경우는 회사별 판매실적, 회사별 수요 예측치,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5) 산정기준 제 5 조의 2 (판매열량 차이의 정산)

- ① 제5조의 판매열량과 관련하여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간에 차이 (이하“판매열량 차이”라 한다)가 $\pm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열량 차이를 정산한다.
- ② 정산금액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승인총괄원가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회수한 회수총괄원가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승인총괄원가는 공급비용 승인시 기준이 되는 추정판매량에 승인된 사용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회수총괄원가는 사후적 실적판매열량에 승인된 사용열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다음연도 평균공급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이연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연도 총괄원가의 증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6) 총괄원가의 구성



2. 적정원가의 산정

1) 산정기준 제 6 조 (적정원가의 구성)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과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법인세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로 산정한다.

2) 산정기준 제 7 조 (영업비용)

영업비용의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 건 비

1.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 부문별 적정 인원수와 정부의 임금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인건비는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

i)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년수는 자산 취득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른 내용년수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ii) 유형자산의 당기 증감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증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2.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분담금,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및 투자재원 등을 제외한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한다.

③ 무형자산상각비

직전년도 무형자산의 미상각잔액과 당해 회계연도 취득예상 무형자산은 잔여상각 내용년수 동안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되 당해 회계연도 취득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상각한다.

④ 기타의 영업비용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부문을 구분하여 각 비용 항목별 비용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접대비 등 관계법령에 법정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반영하며,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중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7등급 초과분)에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위탁에 대한 대가로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의 영업비용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검침(원격검침 포함), 안전점검, 송달 등 고객센터 업무를 고려한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3) 산정기준 제 7 조의 2 (영업비용 등의 정산)

제 7조의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및 제 12조 요금기저 중 공급설비 관련하여 계획금액과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간에 차이(이하 “계획과 실적 차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과 실적 차이를 정산한다.

4) 산정기준 제 8 조 (영업외비용)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련성, 지역내 에너지복지 등 사회공헌,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적정원가 반영여부를 결정)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비용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적정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

② 기타 영업외비용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5) 산정기준 9 조 (영업외수익)

-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수익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적절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
- ② 기타 영업외수익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1) 산정기준 제 11 조 (적정투자보수의 구성)

-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의미한다.
- ②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정기준 제 12 조 (요금기저)

- ①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의 기초/기말 평균가액과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희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입되었던 감가상각비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토지와 공급설비의 재평가차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년도 결산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④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산처분계획을 고려한 순증감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급설비의 순증감액은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 + 당기 투자계획 금액 - 당기 처분자산순액 - 당기중 감가상각비 추정액 -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 ⑥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 당기상각액 및 당기취득과 처분을 고려한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 ⑦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영업비용(원재료비 제외)에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한다

3) 산정기준 제 13 조 (적정투자보수율)

-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 ②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은 예금금리 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수용가 시설전대 차입금은 제외)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에 법인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동조 제⑤항에서 산출된 타인자본으로 관련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로 한다.
- ④ 자기자본은 「유상증자 누계액 + 당기순이익 누계액(결손금 제외) - 배당금 누계액」으로 하되 제외되는 결손금은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결손금에 한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회사전체의 자기자본에서 시설분담금 누계액을 차감한 기초/기말 평균가액을 사업부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⑤ 타인자본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 월말잔액으로 하되, 직전년도 차입금은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사업부 고유 평균차입금과 회사전체 평균차입금을 사업부 자산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액 + 순무형자산액 + 평균건설중인자산 + 운전자금 2개월분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 × 자기자본 구성비 +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 × 타인자본 구성비

4) 산정기준 제 14 조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 ① 미공급지역은 경제성 미달 등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② 사업자는 ①항의 지역에 대해 공사계획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자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킨다.
- ③ ②항의 규정을 충족하여 미공급지역에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급비용 승인 시 제12조 요금기저에 따른 요금기저에 최대 3%의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②항의 공사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되 ③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하여 인정할 경우는 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와 별도의 사업자 재원(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의 50%이상)을 추가하여 미공급 지역의 해당 공사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
- ⑤ ③항에 따라 적정투자보수를 추가로 가산 받은 사업자가 ④의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공급비용 산정 시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투자보수에 무위험이

자율을 가산하여 총괄원가에서 차감한다. 단, 굴착허가 취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미이행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1) 산정기준 제 15 조 (요금의 책정)

- ①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의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시·도지사는 가스요금을 단일요금체계, 2 부제요금체계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도(취사전용, 난방전용, 취사난방용 등)는 2 부제요금체계로 하고 그 외의 용도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2 부제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다.
 1.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2. 사용량요금은 원재료비에 기본요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차감한 공급비용을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④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은 냉방용 가스공급에 소요된 적절한 원가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산정기준 제 16 조 (도시가스 요금수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수준은 원재료비에 총괄원가를 기초로 한 공급비용 단가를 더하여 책정한다. 다만,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의 원재료비는 시·도지사가 권역 내 공급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정할 수 있다.

5.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1) 산정기준 제 17 조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 ① 시·도지사는 외부전문기관이 산정한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와 최종 승인하여 적용한 공급비용 산정 총괄표 등을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자체 위원회를 거쳐 공급비용을 최종 승인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소속, 직책(직위)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 중 실제 권역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여토록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의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와 다르게 요금을 조정할 경우, ①항의 공급비용 산정 총괄표에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①항의 공급 비용 산정보고서에는 공급비용 조정명세서상의 총공급비용 명세서, 공급비용 조정명세서, 영업외비용 조정명세서, 영업외수익 조정명세서, 요금기저 명세서, 운전자금 명세서,

유형자산 명세서, 유형자산 취득계획서, 건설중인 자산 명세서, 가중평균 투자보수를 명세서, 자기자본 수익률 산정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가 요금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운 경우 비공개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III.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산정내역

1. 목포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목포도시가스사는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을 동일 공급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목포, 무안, 영암, 강진 4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11,572,844	(76,307)	11,496,537
인건비	3,634,194	(161,146)	3,473,048
감가상각비	3,063,242	(2,571)	3,060,671
기타영업비용	4,875,408	87,410	4,962,818
(B)영업외비용	13,900	-	13,900
(C)영업외수익	-	-	-
(D)법인세비용	731,209	(42,841)	688,368
(E)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F)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	12,317,953	(119,148)	12,198,805
(G)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F+G)	12,317,953	(119,148)	12,198,805
(I)자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	-	-
(J)적정원가(H+I)	12,317,953	(119,148)	12,198,805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최근 5년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인 2.74%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3,009,080	(148,758)	2,860,322
상여금	344,083	-	344,083
퇴직급여	278,031	(12,388)	265,643
잡급	3,000	-	3,000
합 계	3,634,194	(161,146)	3,473,048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39,846	-	39,846
구축물	5,168	-	5,168
기계장치	4,611	-	4,611
공급설비	2,731,294	(2,571)	2,728,724
차량운반구	37,791	-	37,791
공구와기구	20,219	-	20,219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기타의유형자산	57,429	-	57,429
무형자산	166,884	-	166,884
합 계	3,063,242	(2,571)	3,060,671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346,018	(9,317)	336,701
차량유지비	102,422	(210)	102,212
여비교통비	102,249	(36,591)	65,658
통신비	73,614	(1,708)	71,906
수도광열비	31,835	40,087	71,922
소모품비	72,966	(1,692)	71,274
세금과공과	477,693	(4,365)	473,328
임차료	76,217	(18,545)	57,672
운반비	23,182	(18,182)	5,000
수선비	348,273	-	348,273
보험료	111,663	(2,609)	109,054
접대비	58,639	(1,112)	57,527
광고선전비	7,753	(143)	7,610
교육훈련비	16,800	(1,286)	15,514
도서인쇄비	57,484	(1,062)	56,422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지급수수료	783,418	(4,170)	779,248
고객센터수수료	1,900,495	148,361	2,048,856
주택용계량기교체비	283,937	-	283,937
잡비	750	(46)	704
계	4,875,408	87,410	4,962,818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13,900	-	13,900
영업외수익	-	-	-

마.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	------	-----	-------

①세전 자기자본 투자보수	3,393,605	(192,985)	3,200,620
②유효법인세율	21.35%	-0.04%	21.31%
③세후 자기자본 투자보수	2,669,012	(150,528)	2,518,484
④자기자본 법인세비용(①-③)	724,593	(42,457)	682,136
⑤타인자본 법인세비용	6,616	(385)	6,232
법인세비용(④+⑤)	731,209	(42,841)	688,368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1,418,267	(12,289)	1,405,978
유형자산	34,649,692	(2,035,597)	32,614,095
무형자산	215,840	-	215,840
임차보증금	27,238	-	27,238
합 계	36,311,037	(2,047,886)	34,263,151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29,941,066	-	29,941,066
당기증가 계획치(*)	5,373,962	(116,634)	5,257,329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2,896,358	(2,571)	2,893,788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B)당기말 미상각잔액	32,418,670	(114,063)	32,304,607
(C)평균 미상각잔액[(A+B)÷2]	31,179,868	(57,031)	31,122,837
(D)토지재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 상당액	3,469,824	(1,978,565)	1,491,258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 [C-D+E-F]	34,649,692	(2,035,597)	32,614,095

(*) 공급설비 투자 계획은 5,110,983천원입니다.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299,282	-	299,282
당기증가 계획치	-	-	-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166,884	-	166,884
(B)당기말 미상각잔액	132,398	-	132,398
(C)평균 미상각잔액[(A+B)÷2]	215,840	-	215,840
(D)비가스사업용자산	-	-	-
무형자산계(C-D)	215,840	-	215,840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27,238	-	27,238
당기증가 계획치	-	-	-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27,238	-	27,238
(C)평균 잔액 $[(A+B) \div 2]$	27,238	-	27,238
(D)비가스사업용자산	-	-	-
임차보증금계(C-D)	27,238	-	27,238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4.57%이며, 타인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1.38%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의무 규정에 따라 3%의 의무이행 투자보수율을 가산하여 투자보수율 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의해 미공급지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정산 시 미투자금액에 투자보수율 만큼의 가액을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48,241,587	-	48,241,587
타인자본	2,464,167	-	2,464,167
자기자본수익률	4.57%	-	4.57%
타인자본수익률	1.38%	-	1.38%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42%	-	4.42%
의무이행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투자보수율	7.42%	-	7.42%

4. 투자자원

당년도에 가산된 투자재원은 없습니다.

5. 정산금액

가.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전년도 승인대비 당년도 실적금액(열량은 1.5%)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열량 차이분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배관투자비	274,299	(172,473)	101,826
인건비	(112,285)	-	(112,285)
고객센터수수료	5,644	-	5,644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	-	13,897	13,897
열량정산	-	-	-
정산금액합계	167,658	(158,576)	9,082

나. 배관투자비

배관투자비 정산대상 금액 중 차기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주택용 계량기교체비

인건비 및 고객센터수수료 및 주택용 계량기교체비는 전기승인금액과 당기 실제 발생비용의 차이를 정산하였습니다.

라. 열량정산

열량정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① 추정판매량	5,438,032	-	5,438,032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㉞ 실제 판매량	5,380,360	-	5,380,360
1-㉟ 허용오차율(±1.5%)	1.50%	-	1.50%
1-㊱ 판매량차이(㉞-㉟)	57,672	-	57,672
1-㊲ 허용오차범위(㉞×㉟)	80,705	-	80,705
1-㊳ 허용오차초과여부	미달		미달
2. 총 정산대상금액	-	-	-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	-	-

6.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

당년도에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은 없습니다.

7.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장애인	4,487	127,222	
기초수급자 등	2,995	115,695	
차상위	1,232	23,705	
다자녀	3,037	32,654	
합 계	11,751	299,276	

8.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20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수정후)
공급열량	4,976,708	5,336,372	5,380,360	5,577,476
증가열량	444,781	359,664	43,988	197,116
증 가 율	7.72%	7.23%	0.82%	3.66%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1.5%)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5월까지의 실적에 6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5	실적열량계
열량	784,986	708,142	611,025	577,465	328,986	3,010,604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6	7	8	9	10
열량	286,365	264,617	238,975	260,583	312,710
월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481,020	722,602	5,577,476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3,011,604\text{GJ} + 2,566,872\text{GJ} = 5,577,476\text{GJ}$$

2. 대화도시가스

1. 적정원가

대화도시가스사는 여수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공급함에 따라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여수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9,852,448	(216,316)	9,636,131
인건비	3,537,987	(36,000)	3,501,987
감가상각비	2,438,809	(25,330)	2,413,479
기타영업비용	3,875,652	(154,987)	3,720,665
(B)영업외비용	-	-	-
(C)영업외수익	-	-	-
(D)법인세비용	590,599	(11,922)	578,677
(E)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F)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	10,443,047	(228,238)	10,214,809
(G)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F+G)	10,443,047	(228,238)	10,214,809
(I)지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	-	-
(J)적정원가(H+I)	10,443,047	(228,238)	10,214,809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최근 5년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인 2.74%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2,211,860	(36,000)	2,175,860
상여금	666,780	-	666,780
제수당	316,838	-	316,838
퇴직급여	342,509	-	342,509
합 계	3,537,987	(36,000)	3,501,987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81,563	-	81,563
구축물	250	-	250
전기설비	2,057	-	2,057
공급설비	2,031,683	(23,192)	2,008,490
공구와기구	323,178	(2,137)	321,041
기타의 유형자산	78	-	78
합 계	2,438,809	(25,330)	2,413,479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484,997	(34,744)	450,253
여비교통비	18,314	(3,987)	14,328
차량유지비	133,980	(7,733)	126,247
통신비	40,175	(4,057)	36,118
전력비	23,953	(3,098)	20,855
소모품비	50,403	(14,179)	36,224
세금과공과	409,534	(52,686)	356,847
수선비	159,124	40,165	199,289
보험료	21,767	22	21,788
접대비	36,882	(10,729)	26,153
경조비	1,808	2	1,810
사무용품비	11,446	(1,553)	9,893
교육훈련비	7,447	7	7,454
도서인쇄비	72,616	(2,147)	70,469
지급수수료	605,830	(49,563)	556,267
콜센터수수료	245,356	-	245,356
고객센터수수료	1,455,224	-	1,455,224
주택용계량기교체비	69,916	-	69,916
대손상각비	20,000	(10,000)	10,000
잡비	6,881	(707)	6,174
계	3,875,652	(154,987)	3,720,665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

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	-	-
영업외수익	-	-	-

마.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①세전 자기자본 투자보수	2,546,455	(49,429)	2,497,026
②유효법인세율	21.14%	-	21.12%
③세후 자기자본 투자보수(①X②)	2,008,235	(38,555)	1,969,681
④자기자본 법인세비용(①-③)	538,220	(10,874)	527,345
⑤타인자본 법인세비용	52,379	(1,047)	51,332
법인세비용(④+⑤)	590,599	(11,922)	578,677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1,195,832	(30,165)	1,165,667

유형자산	29,725,424	(563,469)	29,161,955
무형자산	-	-	-
임차보증금	-	-	-
합 계	30,921,256	(593,633)	30,327,623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20,234,238	-	20,234,238
당기증가 계획치(*)	15,141,869	(751,637)	14,390,232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2,438,809	(25,330)	2,413,479
(B)당기말 미상각잔액	32,937,298	(726,307)	32,210,990
(C)평균 미상각잔액[(A+B)÷2]	26,585,768	(363,154)	26,222,614
(D)토지재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 상당액	3,139,657	(200,315)	2,939,341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C-D+E-F]	29,725,424	(563,469)	29,161,955

(*) 공급설비 투자 계획은 13,704,164천원입니다.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없습니다.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4.57%이며, 타인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2.68%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의무 규정 등에 따라 3%의 의무이행 투자보수율을 가산하여 투자보수율 산정하였습니다. 미공급지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정산 시 미투자금액에 투자보수율 만큼의 가액을 가산하여 (-)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25,990,379	-	25,990,379
타인자본	8,016,917	-	8,016,917
자기자본수익률	4.57%	-	4.57%
타인자본수익률	2.68%	-	2.68%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13%	-	4.13%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적정투자보수율	7.13%	-	7.13%

4. 정산금액

가.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전년도 승인대비 당년도 실적금액(열량은 1.5%)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 및 열량 차이분배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배관투자비	286,895	-	286,895
인건비	217,551	-	217,551
고객센터수수료	55,737	-	55,737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	(894)	-	(894)
열량정산	(938,711)	(455,321)	(1,394,032)
정산금액합계	(379,422)	(455,321)	(834,743)

나. 배관투자비

배관투자비 정산대상 금액 중 차기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는 전기승인금액과 당기 실제 발생비용의 차이를 정산하였습니다.

라. 열량정산

열량정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① 추정판매량	7,839,405	-	7,839,405
1-② 실제판매량	7,701,042	-	7,701,042
1-③ 허용오차율(±1.5%)	1.50%	-	1.50%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㉔ 판매량차이(㉔-㉔)	(138,363)	-	(138,363)
1-㉕ 허용오차범위(㉔×㉔)	115,516	-	115,516
1-㉖ 허용오차초과여부	초과		초과
2. 총 정산대상금액	(938,711)	(455,321)	(1,394,032)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938,711)	(455,321)	(1,394,032)

6.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

당년도에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은 없습니다.

7.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등	3,028	127,159	
장애인, 유공자	2,641	128,272	
차상위	840	19,573	
다자녀	2,353	27,742	
합 계	8,862	302,746	

8.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20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수정 후)
공급열량	6,205,528	9,270,561	7,701,042	9,074,050
증가열량	444,781	3,065,033	(1,569,519)	1,373,008

증가율	7.72%	49.39%	-16.93%	17.83%
-----	-------	--------	---------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1.5%)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5월까지의 실적에 6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5	실적열량계
열량	1,090,301	899,763	884,671	737,512	627,679	4,239,926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6	7	8	9	10
열량	578,045	583,943	603,617	613,676	667,923
월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796,323	990,597	9,074,050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4,239,926\text{GJ} + 4,834,124\text{GJ} = 9,074,050\text{GJ}$$

3. 전남도시가스

1. 적정원가

전남도시가스사는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을 동일 공급 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6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21,195,805	(519,960)	20,675,845
인건비	5,555,447	(264,397)	5,291,051
감가상각비	5,057,402	14,368	5,071,771
기타영업비용	10,582,955	(269,932)	10,313,024
(B)영업외비용	102,000	(20,000)	82,000
(C)영업외수익	50,000	-	50,000
(D)법인세비용	1,096,022	(9,939)	1,086,083
(E)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F)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	22,343,827	(549,899)	21,793,928
(G)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F+G)	22,343,827	(549,899)	21,793,928
(I)지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	-	-
(J)적정원가(H+I)	22,343,827	(549,899)	21,793,928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최근 5년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인 2.74%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3,709,438	(75,872)	3,633,566
상여금	1,203,679	(161,551)	1,042,128
제수당	239,235	(7,104)	232,131
퇴직급여	385,836	(19,584)	366,252
잡급	17,259	(285)	16,973
합 계	5,555,447	(264,397)	5,291,051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170,403	-	170,403
구축물	3,002	-	3,002
공급설비	4,217,108	(70,509)	4,146,599
차량운반구	164,352	54,593	218,945
기타의 유형자산	308,617	30,285	338,901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무형자산	193,921	-	193,921
합 계	5,057,402	14,368	5,071,771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후생비	1,554,998	(71,723)	1,483,275
여비교통비	110,660	(15,000)	95,660
차량유지비	142,768	3,662	146,430
통신비	306,454	7,116	313,570
수도광열비	156,490	3,634	160,124
소모품비	142,838	-	142,838
세금과공과	433,350	(28,065)	405,285
임차료	124,940	(37,437)	87,503
수선비	549,571	-	549,571
보험료	74,691	(13,084)	61,607
접대비	100,439	99	100,538
회의비	23,143	-	23,143
광고선전비	2,829	-	2,829
교육훈련비	69,680	(19,964)	49,717
도서인쇄비	23,851	456	24,307
지급수수료	3,245,892	(33,057)	3,212,835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고객센터수수료	3,437,312	(67,046)	3,370,267
주택용계량기교체비	51,903	-	51,903
대손상각비	6,274	-	6,274
잡비	24,871	475	25,347
계	10,582,955	(269,932)	10,313,024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102,000	(20,000)	82,000
영업외수익	50,000	-	50,000

마.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①세전 자기자본 투자보수	4,917,519	(43,029)	4,874,490
②유효법인세율	21.55%	-	21.55%
③세후 자기자본 투자보수(①X②)	3,857,665	(33,562)	3,824,102
④자기자본 법인세비용(①-③)	1,059,854	(9,467)	1,050,388
⑤타인자본 법인세비용	36,168	(473)	35,695
법인세비용(④+⑤)	1,096,022	(9,939)	1,086,083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2,628,305	(28,672)	2,599,633
유형자산	49,752,908	(435,364)	49,317,544
무형자산	612,805	-	612,805
임차보증금	342,127	-	342,127
합 계	53,336,145	(464,036)	52,872,109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47,265,396	-	47,265,396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당기증가 계획치(*)	8,948,186	(769,597)	8,178,589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4,863,482	14,368	4,877,850
(B)당기말 미상각잔액	51,350,100	(783,965)	50,566,135
(C)평균 미상각잔액[(A+B)÷2]	49,307,748	(391,982)	48,915,766
(D)토지재평가차익	-	-	-
(E)건설중인자산상당액	445,160	(43,381)	401,778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C-D+E-F]	49,752,908	(435,364)	49,317,544

(*) 공급설비 투자 계획은 7,433,485천원입니다.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628,166	-	628,166
당기증가 계획치	163,200	-	163,200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193,921	-	193,921
(B)당기말 미상각잔액	597,445	-	597,445
(C)평균 미상각잔액[(A+B)÷2]	612,805	-	612,805
(D)비가스 사업용자산	-	-	-
무형자산계(C-D)	612,805	-	612,805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342,127	-	342,127
당기증가 계획치	-	-	-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342,127	-	342,127
(C)평균 잔액[(A+B)÷2]	342,127	-	342,127
(D)비가스 사업용자산	-	-	-
임차보증금계(C-D)	342,127	-	342,127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4.57%이며, 타인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3.33%로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의무 규정에 따라 3%의 의무이행 투자보수율을 가산하여 투자보수율 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의해 미공급지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정산 시 미투자금액에 투자보수율만큼의 가액을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45,765,139	-	45,765,139
타인자본	3,660,000	-	3,660,000
자기자본수익률	4.57%	-	4.57%
타인자본수익률	3.33%	-	3.33%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48%	-	4.48%
의무이행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투자보수율	7.48%	-	7.48%

4. 투자재원

당년도에 가산된 투자재원은 없습니다.

5. 정산금액

가.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전년도 승인대비 당년도 실적금액(열량은 1.5%)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 및 열량 차이분배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배관투자비	(70,867)	-	(70,867)
인건비	(86,937)	-	(86,937)
고객센터수수료	261,332	-	261,332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	(223,409)	-	(223,409)
열량정산	(205,280)	-	(205,280)
정산금액합계	(325,161)	-	(325,161)

나. 배관투자비

배관투자비 정산대상 금액 중 차기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는 전기승인금액과 당기 실제 발생비용의 차이를 정산하였습니다.

라. 열량정산

열량정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① 추정판매량	12,289,788	-	12,289,788
1-② 실제판매량	12,051,918	-	12,051,918
1-③ 허용오차율(±1.5%)	1.50%	-	1.50%
1-④ 판매량차이(②-①)	(237,870)	-	(237,870)
1-⑤ 허용오차범위(③×④)	180,779	-	180,779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① 허용오차초과여부	초과		초과
2. 총 정산대상금액	181,977	-	181,977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387,257)	-	(387,257)
5. 금년 정산반영액(2-3+4)	(205,280)	-	(205,280)

6.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

당년도에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은 없습니다.

7.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등	3,364	93,566	
장애인, 유공자	4,144	150,654	
차상위	1,019	18,277	
다자녀	4,780	42,955	
사회복지시설	-	22,376	
합 계	13,307	327,828	

8.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20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수정 후)
공급열량	10,116,659	11,583,911	12,289,788	11,499,525
증가열량	862,635	1,467,252	705,877	(790,263)
증 가 율	9.32%	14.50%	6.09%	-6.43%

(*) 당기 추정열량은 산업용 물량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1.5%)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5월까지의 실적에 6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5	실적열량계
열량	1,411,072	1,302,548	1,123,664	961,154	673,666	5,472,104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6	7	8	9	10
열량	622,604	721,782	670,262	729,093	786,531
월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1,061,042	1,436,107	11,499,525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5,472,104\text{GJ} + 6,027,421\text{GJ} = 11,499,525\text{GJ}$$

4. 해양에너지

1. 적정원가

해양에너지사는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해남군 및 장흥군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공급함에 따라 8개 지역을 동일 공급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8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영업비용	12,254,401	(646,684)	11,607,717
인건비	3,275,295	(229,818)	3,045,477
감가상각비	3,807,702	(19,318)	3,788,384
기타영업비용	5,171,404	(397,548)	4,773,856
(B)영업외비용	25,000	-	25,000
(C)영업외수익	-	-	-
(D)법인세비용	1,095,882	(5,140)	1,090,742
(E)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F)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	13,375,283	(651,824)	12,723,459
(G)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H)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F+G)	13,375,283	(651,824)	12,723,459
(I)지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	-	-
(J)적정원가(H+I)	13,375,283	(651,824)	12,723,459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률은 최근 5년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인 2.74%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급여	1,563,398	(29,539)	1,533,859
상여금	1,370,049	(192,200)	1,177,849
제수당	38,639	(2,350)	36,289
퇴직급여	303,209	(5,729)	297,480
합 계	3,275,295	(229,818)	3,045,477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 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건물	33,497	-	33,497
구축물	955	-	955
공급설비	3,538,832	(1,257)	3,537,575
공구와기구	5,223	-	5,223
기타의 유형자산	87,324	(1,505)	85,818
무형자산	141,871	(16,555)	125,316
합 계	3,807,702	(19,318)	3,788,384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복리 후생비	623,802	(68,544)	555,258
여비교통비	107,719	(19,378)	88,341
차량유지비	252,316	(576)	251,740
자재비	92,909	(12,183)	80,726
고객센터수수료	2,213,233	(124,000)	2,089,233
외주용역비	289,966	(21,257)	268,709
지급임차료	119,577	(70,113)	49,464
수도광열비	18,520	(6,092)	12,428
통신비	93,630	5,712	99,342
문구인쇄비	27,789	(3,984)	23,805
사무용품비	2,927	(97)	2,830
광고선전비	48,955	(12,910)	36,045
제세금	428,495	(8,120)	420,375
보험료	8,503	-	8,503
제수수료	702,235	(50,778)	651,457
교육훈련비	16,579	(5,228)	11,351
주택용계량기교체비	123,864	-	123,864
대손상각비	385	-	385
계	5,171,404	(397,548)	4,773,856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영업외비용	25,000	-	25,000
영업외수익	-	-	-

마.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①세전 자기자본 투자보수	5,008,384	(23,364)	4,985,020
②유효법인세율	21.88%	-	21.88%
③세 후 자기자본 투자보수(①X②)	3,912,502	(18,224)	3,894,278
④자기자본 법인세비용(①-③)	1,095,882	(5,140)	1,090,742
⑤타인자본 법인세비용	-	-	-
법인세비용(④+⑤)	1,095,882	(5,140)	1,090,742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운전자금	1,407,719	(104,561)	1,303,158
유형자산	49,525,054	(78,150)	49,446,905
무형자산	617,559	(57,944)	559,615
임차보증금	116,000	-	116,000
합 계	51,666,333	(240,655)	51,425,678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47,962,292	-	47,962,292
당기증가 계획치(*)	2,886,749	(62,316)	2,824,434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3,665,831	(2,762)	3,663,069
(B)당기말 미상각잔액	47,183,211	(59,554)	47,123,657
(C)평균 미상각잔액[(A+B)÷2]	47,572,751	(29,777)	47,542,974
(D)토지재평가차익	10,377	-	10,377
(E)건설중인자산상당액	1,962,680	(48,373)	1,914,307
(F)비가스사업용자산	-	-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유형자산계[C-D+E-F]	49,525,054	(78,150)	49,446,905

(*) 공급설비 투자 계획은 2,412,160천원입니다.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미상각잔액	1,751,547	-	1,751,547
당기증가 계획치	3,744,220	(697,070)	3,047,150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746,691	(87,134)	659,557
(B)당기말 미상각잔액	4,749,077	(609,936)	4,139,140
(C)평균 미상각잔액[(A+B)÷2]	3,250,312	(304,968)	2,945,344
(D)비가스 사업용자산	2,632,753	(247,024)	2,385,728
무형자산계(C-D)	617,559	(57,944)	559,615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A)전기말 잔액	295,000	-	295,000
당기증가 계획치	-	-	-
당기감소 계획치	-	-	-
(B)당기말 잔액	295,000	-	295,000
(C)평균 잔액[(A+B)÷2]	295,000	-	295,000
(D)비가스 사업용자산	-	-	-
임차보증금계(C-D)	295,000	-	295,000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4.57%이며, 타인자본은 없으므로 타인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없습니다. 여기에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 의무 규정에 따라 3%의 의무이행 투자보수율을 가산하여 투자보수율 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급규정에 의해 미공급지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정산 시 미투자금액에 투자보수율만큼의 가액을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자기자본	122,273,998	-	122,273,998
타인자본	-	-	-
자기자본수익률	4.57%	-	4.57%
타인자본수익률	-	-	-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57%	-	4.57%
의무이행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투자보수율	7.57%	-	7.57%

4. 투자재원

당년도에 가산된 투자재원은 없습니다.

5. 정산금액

가.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전년도 승인대비 당년도 실적금액(열량은 1.5%)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열량 차이분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배관투자비	132,610	-	132,610
인건비	206,318	-	206,318
고객센터수수료	174,167	-	174,167

항목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	-	19,041	19,041
열량정산	-	-	-
정산금액합계	513,095	19,041	532,136

나. 배관투자비

배관투자비 정산대상 금액 중 차기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주택용 계량기교체비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및 주택용 계량기교체비는 전기승인금액과 당기 실제 발생비용의 차이를 정산하였습니다.

라. 열량정산

열량정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 정	조정후금액
1. 정산대상열량			
1-㉠ 추정판매량	6,218,446	-	6,218,446
1-㉡ 실제판매량	6,148,219	-	6,148,219
1-㉢ 허용오차율(±1.5%)	1.50%	-	1.50%
1-㉣ 판매량차이(㉡-㉠)	70,227	-	70,227
1-㉤ 허용오차범위(㉡×㉢)	92,223	-	92,223
1-㉥ 허용오차초과여부	미달		미달
2. 총 정산대상금액	-	-	-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	-	-

6.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

당년도에 미공급지역 투자 의무 미이행 조정액은 없습니다.

7.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구 분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등	43,657	130,216	
차상위	8,045	12,614	
다자녀	26,487	21,549	
사회복지시설	2,367	23,618	
합 계	80,556	187,997	

8.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20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수정 후)
공급열량	5,443,000	5,969,422	6,148,219	6,487,072
증가열량	312,251	526,422	178,797	338,853
증 가 율	6.09%	9.67%	3.00%	5.51%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1.5%)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5월까지의 실적에 6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	2	3	4	5	실적열량계
열량	747,968	737,425	678,156	621,500	491,496	3,276,545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6	7	8	9	10
열량	418,493	401,165	382,894	365,378	406,461
월	11	12	추정열량계		
열량	555,231	680,905	6,487,072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3,276,545\text{GJ} + 3,210,527\text{GJ} = 6,487,072\text{GJ}$$

IV. 용도별 공급비용

용도별 소비자 가격의 조정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포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1	
			공급 비용	조정율
주택용	2,967,008	3.0478	3.0403	-0.24%
영업용1	375,430	3.9597	3.9500	-0.24%
영업용2	110,696	3.4523	3.4438	-0.24%
업무난방용	80,042	3.4499	3.4415	-0.24%
냉난방공조용	158,636	1.6988	1.6946	-0.24%
산업용1	1,472,640	1.5129	1.5092	-0.24%
산업용2	151,526	0.5297	0.5284	-0.24%
연료전지	6,812	0.6019	0.6019	-
수송용	254,686	0.4906	0.4906	-
합계	5,577,476			

* 산업용2 요금은 월43.05 TJ 초과 사용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1가지 대안을 산출하였습니다.

대안1: 인하 요인을 각 용도별 균등배분(연료전지, 수송용 제외)

2. 대화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공급 비용	조정율
주택용	2,493,480	2.0121	2.0121	-
영업용1	221,378	2.0121	2.0121	-
영업용2	175,798	2.0121	2.0121	-
업무난방용	78,384	1.9330	1.9330	-
냉난방공조용	78,452	1.3167	1.3167	-
산업용1	5,249,491	0.8411	0.8411	-
산업용2	-	0.0567	0.0567	-
열병합용	18,351	1.3788	1.3788	-
열전용설비	99,115	1.3788	1.3788	-
연료전지	266,224	0.6019	0.6019	-
수송용	393,376	0.4906	0.4906	-
합계	9,074,050			

* 산업용2 요금은 월129.15 TJ 초과 사용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1가지 대안을 산출하였습니다.

대안1: 용도별 동결

3. 전남도시가스

(단위: GJ, 원/MJ)

구분	열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1		대안2		대안3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공급 비용	조정율
주택용	3,937,357	2.7960	2.9124	4.16%	2.7960	0.00%	2.8952	3.55%
영업용1	488,495	3.3457	3.4850	4.16%	3.3457	0.00%	3.4644	3.55%
영업용2	78,867	3.2245	3.3587	4.16%	3.2245	0.00%	3.3389	3.55%
업무난방용	142,622	3.3601	3.5000	4.16%	3.3601	0.00%	3.4793	3.55%
냉방용	123,586	1.8240	1.8999	4.16%	1.8240	0.00%	1.8887	3.55%
산업용1	1,272,948	1.9634	2.0451	4.16%	2.1612	10.08%	2.0623	5.04%
산업용2	643,248	1.7491	1.8219	4.16%	1.9253	10.08%	1.8372	5.04%
산업용3	-	1.5491	1.6136	4.16%	1.7052	10.08%	1.6271	5.04%
산업용4	4,508,411	1.3207	1.3757	4.16%	1.4538	10.08%	1.3872	5.04%
연료전지	191	0.6019	0.6019	0.00%	0.6019	0.00%	0.6019	0.00%
수송용	303,799	0.4906	0.4906	0.00%	0.4906	0.00%	0.4906	0.00%
합계	11,499,525							

* 산업용2 요금은 월43.05 TJ 초과시, 산업용3 요금은 129.15초과시, 산업용4 요금은 301.35초과시 적용됩니다.

** 산업용4는 공급권역내 동일법인일 경우, 통합열량으로 해당 부제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을 산출하였고, 대안 1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안1: 인상, 인하 요인을 각 용도별 균등배분(연료전지, 수송용 제외)

대안2: 인상요인 산업용 100% 적용(연료전지, 수송용 제외)

대안3: 주택용 등 50%, 산업용 50% 적용(연료전지, 수송용 제외)

4. 해양에너지

(단위: GJ, 원/MJ)

구 분	열 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 1	
			공급 비용	조정율
주택용	1,622,504	3.2101	3.2101	-
영업용1	236,946	4.6319	4.6319	-
영업용2	40,700	3.5619	3.5619	-
업무난방용	181,859	4.0474	4.0474	-
냉난방공조용	48,126	1.89	1.89	-
산업용1	2,280,214	2.3522	2.3522	-
산업용2	1,162,021	1.6464	1.6464	-
열병합용	58,506	2.025	2.025	-
열전용설비	572,102	3.1732	3.1732	-
연료전지	543	0.6019	0.6019	-
수송용	283,550	0.4906	0.4906	-
합계	6,487,072			

* 산업용2 요금은 월43.05 TJ 초과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1가지 대안을 산출하였습니다.

대안 1: 용도별 동결

V.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전라남도에서 제시한 중점검토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14조 3항 1호에 따라 산정된 주택용 기본요금 산정내역과 현행기본요금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전남도도시가스	해양에너지
공급관감가상각비	987,575	197,586	982,039	516,238
검침비	412,511	355,040	531,926	109,293
송달비	-	159,838	30,904	37,354
고지서발행비	44,953	51,940	-	13,804
지로수수료	136,806	107,517	-	131,003
안전점검비	356,936	446,873	830,861	377,562
계량기교체비	651,661	304,809	51,903	147,439
합계	2,590,441	1,623,602	2,427,632	1,332,693
수용가수(세대)	131,094	92,800	158,828	84,250
기본요금 산정액(원)	1,647	1,458	1,274	1,318
현재 기본요금(원)	770	770	770	770
현재요금 대비 수준	214%	189%	165%	171%

(자료 : 회사제시 및 대주회계법인 분석)

현재 적용되는 기본요금 대비 산정된 요금 수준은 각 사별로 최저 165% ~ 최고 214%로 4개사 모두 현재 기본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및 평균공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지 역	공급회사	기본요금	평균공급비용
서울특별시	서울 5 사	1,000	1.3616
경기도	삼천리외	850	1.3969

지 역	공급회사	기본요금	평균공급비용
인천광역시	인천외	840	1.3341
부산시	부산	900	2.0349
대구시	대성	820	1.9151
광주시	해양	750	1.9591
대전시	충남	850	2.3229
울산시	경동	778	0.8444
세종시	중부	760	2.3100
강원 춘천시	강원	950	3.1304
강원 원주시	참빛원주	950	2.5042
강원 영동지역	참빛영동	950	4.5445
강원 평창시	명성	950	3.5992
충북 청주시	충청ES	950	1.9756
충북 충주시	참빛충북	950	2.2388
충남 천안시	중부	820	2.0093
충남 서산시	서해	820	1.4995
전북 전주시	전북	750	1.9332
전북 군산시	군산	750	1.5723
전북 익산시	전북ES	750	2.9236
전남 목포시	목포	770	2.7661
전남 순천시	전남	770	2.0733
전남 여수시	대화	770	1.1528
전남 나주시	해양	770	2.6715
경북 구미시	영남ES	750	1.9545
경북 포항시	영남ES	750	2.1005
경북 경주시	서라벌	750	2.1644
경북 안동시	대성청정E	750	2.0617
경남 창원시	경남	850	2.2034
경남 진주시	지에스이	1,100	2.7149
경남 양산시	경동	850	1.7874
평 균		839	2.1632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상기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지역의 기본요금은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이며 전국 기본요금의 단순평균인 839원보다 69원이 낮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을 검토해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들의 경우 인구수와 인구집적도가 높아 보급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인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인상의 필요성이 없지만, 인구집적도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방의 경우 보급률 증대를 위해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경제성 확보의 노력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보급률 평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기본요금은 950원으로 전국 기본요금 평균 839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산악지형 등의 불리한 여건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강원도와 유사한 보급률을 나타내는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전국 최하위 보급률 수준인 전라남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770원인 기본요금의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며, 기본요금 인상을 통해 도시가스사의 발생 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사용량 요금의 인상폭을 낮추는 한편 전국 최저 수준의 보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독려하는 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민의 에너지 사용 편리성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단위: 원, 세대)

지 역	기본요금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 고
서울특별시	1,000	98.21%	4,249,965	4,327,605	
인천광역시	840	91.62%	1,134,868	1,238,641	
경기도	850	87.60%	4,790,907	5,468,920	
수도권 소계		92.21%	10,175,740	11,035,166	
부산광역시	900	94.76%	1,419,384	1,497,908	
대구광역시	820	97.05%	1,000,869	1,031,251	
광주광역시	750	100.25%	618,012	616,485	
대전광역시	850	95.10%	604,211	635,343	
울산광역시	778	94.98%	445,116	468,659	

지역	기본요금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760	80.06%	108,412	135,408	
강원도	950	50.42%	362,805	719,524	
충청북도	950	67.52%	487,553	722,123	
충청남도	820	68.80%	659,942	959,255	
전라북도	750	70.04%	571,660	816,191	
전라남도	770	51.23%	447,035	872,628	
경상북도	750	65.19%	800,208	1,227,548	
경상남도	850	74.75%	1,084,560	1,450,822	
제주특별자치도	-	9.89%	29,005	293,155	
지방 소계		75.47%	8,638,772	11,446,300	
전국 합계		83.69%	18,814,512	22,481,466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2.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5항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되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4개 도시가스 회사별 고객센터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목포	대화	전남	해양
고객센터 수	1 개소	2 개소	3 개소	8 개소
총 근무인원	51명	38명	62명	42명
수수료산정방식	건별 표준비용	건별 표준비용	총괄원가보상	건별 표준비용
2019년 지급수수료	1,741,874	1,280,147	3,074,396	1,890,697

구 분	목 포	대 화	전 남	해 양
2020년 수수료반영액	2,048,856	1,455,224	3,212,835	2,089,233
인정공급열량(GJ)	5,577,476	9,074,050	11,499,525	6,487,072
공급열량당 수수료 (원/GJ)	0.3673	0.1604	0.2794	0.3221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 보상방식으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남도시가스를 제외한 3개사의 경우 해당 고객센터에 대한 원가자료를 근거로 별도로 서비스센터 원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나 각 사의 경우 해당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산출에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현행 체제에서 각 서비스항목별로 약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검토 후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 도시가스회사별 총괄원가 보상방식에 따라 산출된 고객센터 수수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산출된 단가를 기준으로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화도시가스 및 해양에너지는 고객센터수수료만 포함되어 있으나, 목포도시가스와 전남도시가스의 경우 고객센터와 콜센터를 동시에 운영하여 콜센터수수료와 고객센터수수료가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공급열량당 수수료의 단가가 타도시가스사에 비해 높으며, 해양에너지의 경우, 공급권역이 방대함에 따라 8개의 고객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함에 따라 공급열량당 수수료의 단가가 높습니다.

각 도시가스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가스회사 4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각 사별로 고객센터 수수료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고객센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급비용산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는 전액 지급하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사별로 고객센터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 지급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수수료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전라남도에서 적정한 총괄원가 보상방법으로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여 요금산정에 반영할 경우, 각 사별로 합리적인 고객센터 수수료 비용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경제성이 낮은 도시 내 주택지역 시설투자 확대방안

전라남도의 경우 현재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원도심이나 낙후지역으로 투자대비 경제성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낮은 경제성으로 인하여 지역도시가스사의 경우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하게 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와 지역도시가스사간에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관투자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관 투자의 초기에는 1m당 공급받는 수요가 수와 공급량은 적지만 배관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공급비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공급량의 증가가 수반되어 평균공급비용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우 2018년 용역시에는 투자재원을 가산하지 않았으나 대화도시가스의 경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해양에너지에도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용역 결과 상기의 투자재원은 모두 투자되어 남은 잔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도시가스사의 자체자금 및 조달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배관투자를 위하여 배관투자에 대한 장기 저리의 용자 지원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도시가스를 개설하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배관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비 감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및 시설분담금 증가나 투자재원을 통한 투자비 유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급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도시가스협회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2019년 12월말 기준 도시가스 전국 보급률 현황에서 전라남도의 보급률은 51.23%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최하위 수준입니다.

(단위: 원, 세대)

지역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고
서울특별시	98.21%	4,249,965	4,327,605	
인천광역시	91.62%	1,134,868	1,238,641	
경기도	87.60%	4,790,907	5,468,920	
수도권 소계	92.21%	10,175,740	11,035,166	
부산광역시	94.76%	1,419,384	1,497,908	
대구광역시	97.05%	1,000,869	1,031,251	
광주광역시	100.25%	618,012	616,485	
대전광역시	95.10%	604,211	635,343	
울산광역시	94.98%	445,116	468,659	
세종특별자치시	80.06%	108,412	135,408	
강원도	50.42%	362,805	719,524	
충청북도	67.52%	487,553	722,123	
충청남도	68.80%	659,942	959,255	
전라북도	70.04%	571,660	816,191	
전라남도	51.23%	447,035	872,628	
경상북도	65.19%	800,208	1,227,548	
경상남도	74.75%	1,084,560	1,450,822	
제주특별자치도	9.89%	29,005	293,155	
지방 소계	75.47%	8,638,772	11,446,300	
전국 합계	83.69%	18,814,512	22,481,466	

(자료 : 도시가스협회)

전라남도는 지리적 특성상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넓고 서남해안 인근의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타 시도에 비해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미공급 지역은 원도심 지역의 단독주택 단지나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 지역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으로의 공급권역 확대는 공급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나 보일러유(등유)나 전기 등 대체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급률 확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비 감축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과 수요가의 시설분담금 현실화와 함께 점진적인 도시가스 요금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 공급 확대에 의한 요금인상은 기존 수요가와 신규 수요가 사이에 교차보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보조금이나 투자재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격한 공급 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소비자의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 부속명세서

- 목포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11,572,844	(76,307)	11,496,537	
급여	3,009,080	(148,758)	2,860,322	
상여금	344,083	-	344,083	
퇴직급여	278,031	(12,388)	265,643	
잡급	3,000	-	3,000	
감가상각비	2,896,358	(2,571)	2,893,788	
무형자산상각비	166,884	-	166,884	
복리후생비	346,018	(9,317)	336,701	
차량유지비	102,422	(210)	102,212	
여비교통비	102,249	(36,591)	65,658	
통신비	73,614	(1,708)	71,906	
수도광열비	31,835	40,087	71,922	
소모품비	72,966	(1,692)	71,274	
세금과공과	477,693	(4,365)	473,328	
임차료	76,217	(18,545)	57,672	
운반비	23,182	(18,182)	5,000	
수선비	348,273	-	348,273	
보험료	111,663	(2,609)	109,054	
접대비	58,639	(1,112)	57,527	
광고선전비	7,753	(143)	7,610	
교육훈련비	16,800	(1,286)	15,514	
도서인쇄비	57,484	(1,062)	56,422	
지급수수료	783,418	(4,170)	779,248	
고객센터수수료	1,900,495	148,361	2,048,856	
주택용계량기교체비	283,937	-	283,937	
잡비	750	(46)	704	
(B) 영업외비용	13,900	-	13,900	
기부금	13,900	-	13,900	
(C) 영업외수익	-	-	-	
(D) 법인세비용	731,209	(42,841)	688,368	
(E) 적정원가	12,317,953	(119,148)	12,198,805	A+B-C+D

- 목포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11,572,844	(76,307)	11,496,537	
(B) 감가상각비	2,896,358	(2,571)	2,893,788	
(C) 대손상각	-	-	-	
(D) 무형자산상각비	166,884	-	166,884	
(E) 퇴직급여	278,031	(12,388)	265,643	
(F) 소계	3,341,273	(14,959)	3,326,314	(B+C+D+E)
(G) 퇴직급여현금지출액	278,031	(12,388)	265,643	
(H) 현금지출경비	8,509,602	(73,736)	8,435,866	(A-F+G)
(I) 운전자금	1,418,267	(12,289)	1,405,978	(H)x2/12
(J) 유형자산	34,649,692	(2,035,597)	32,614,095	
(K) 무형자산	215,840		215,840	
(L) 임차보증금	27,238		27,238	
(M) 요금기저	36,311,037	(2,047,886)	34,263,151	I+J+K+L
(N) 적정투자보수율	7.42%	-	7.42%	
(O) 적정투자보수	2,693,382	(151,903)	2,541,479	MXN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988,900	-	1,988,900	
(B) 당기순이익누계	49,933,887	-	49,933,887	
(C) 배당금지급액누계	3,681,200	-	3,681,200	
(D) 자기자본	48,241,587	-	48,241,587	A+B-C
(E) 타인자본적수	29,570,000	-	29,570,000	
(F) 월평균잔액	2,464,167	-	2,464,167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57%	-	4.57%	
(H) 이자비용	43,270	-	43,270	
(I) 타인자본보수율	1.38%	-	1.38%	H/Fx(1-세 후법인세율)

(J) 가중평균보수율	4.42%	-	4.42%	$[(D \times G) + (F \times I)] / (D + F)$
(K) 미공급지역가산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7.42%	-	7.42%	J+K

- 대화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화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9,852,448	(216,317)	9,636,131	
급여	2,211,860	(36,000)	2,175,860	
상여금	666,780	-	666,780	
제수당	316,838	-	316,838	
퇴직급여	342,509	-	342,509	
감가상각비	2,438,809	(25,330)	2,413,479	
무형자산상각비	-	-	-	
복리후생비	484,997	(34,744)	450,253	
여비교통비	18,314	(3,987)	14,328	
차량유지비	133,980	(7,733)	126,247	
통신비	40,175	(4,057)	36,118	
전력비	23,953	(3,098)	20,855	
소모품비	50,403	(14,179)	36,224	
세금과공과	409,534	(52,686)	356,847	
수선비	159,124	40,165	199,289	
보험료	21,767	22	21,788	
접대비	36,882	(10,729)	26,153	
경조비	1,808	2	1,810	
사무용품비	11,446	(1,553)	9,893	
교육훈련비	7,447	7	7,454	
도서인쇄비	72,616	(2,147)	70,469	
지급수수료	605,830	(49,563)	556,267	
콜센터수수료	245,356	-	245,356	
고객센터수수료	1,455,224	-	1,455,224	
주택용계량기교체비	69,916	-	69,916	
대손상각비	20,000	(10,000)	10,000	
잡비	6,881	(707)	6,174	
(B) 영업외비용	-	-	-	
(C) 영업외수익	-	-	-	
(D) 법인세비용	590,599	(11,922)	578,677	
(E) 적정원가	10,443,047	(228,239)	10,214,809	A+B-C+D

- 대화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화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9,852,448	(216,317)	9,636,131	
(B) 감가상각비	2,438,809	(25,330)	2,413,479	
(C) 대손상각	20,000	(10,000)	10,000	
(D) 무형자산상각비	-	-	-	
(E) 퇴직급여	342,509	-	342,509	
(F) 소계	2,801,318	(35,330)	2,765,989	(B+C+D+E)
(G) 퇴직급여현금지출액	123,861	-	123,861	
(H) 현금지출경비	7,174,991	(180,987)	6,994,004	(A-F+G)
(I) 운전자금	1,195,832	(30,164)	1,165,667	(H)x2/12
(J) 유형자산	29,725,424	(563,469)	29,161,955	
(K) 무형자산	-	-	-	
(L) 임차보증금	-	-	-	
(M) 요금기저	30,921,256	(593,633)	30,327,623	I+J+K+L
(N) 적정투자보수율	7.13%	-	7.13%	
(O) 적정투자보수	2,203,675	(42,307)	2,161,368	MXN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화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800,000	-	1,800,000	
(B) 당기순이익누계	55,900,795	-	55,900,795	
(C) 배당금지급액누계	31,710,416	-	31,710,416	
(D) 자기자본	25,990,379	-	25,990,379	A+B-C
(E) 타인자본적수	96,203,000	-	96,203,000	
(F) 월평균잔액	8,016,917	-	8,016,917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57%	-	4.57%	
(H) 이자비용	272,552	-	272,552	
(I) 타인자본보수율	2.68%	-	2.68%	H/Fx(1-세 후법인세율)

(J) 가중평균보수율	4.13%	-	4.13%	$[(D \times G) + (F \times I)] / (D + F)$
(K) 미공급지역가산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7.13%	-	7.13%	J+K

- 전남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21,195,805	(519,960)	20,675,845	
급여	3,709,438	(75,872)	3,633,566	
상여금	1,203,679	(161,551)	1,042,128	
제수당	239,235	(7,104)	232,131	
퇴직급여	385,836	(19,584)	366,252	
잡급	17,259	(285)	16,973	
감가상각비	4,863,482	14,368	4,877,850	
무형자산상각비	193,921	-	193,921	
복리후생비	1,554,998	(71,723)	1,483,275	
여비교통비	110,660	(15,000)	95,660	
차량유지비	142,768	3,662	146,430	
통신비	306,454	7,116	313,570	
수도광열비	156,490	3,634	160,124	
소모품비	142,838	-	142,838	
세금과공과	433,350	(28,065)	405,285	
임차료	124,940	(37,437)	87,503	
수선비	549,571	-	549,571	
보험료	74,691	(13,084)	61,607	
접대비	100,439	99	100,538	
회의비	23,143	-	23,143	
광고선전비	2,829	-	2,829	
교육훈련비	69,680	(19,964)	49,717	
도서인쇄비	23,851	456	24,307	
지급수수료	3,245,892	(33,057)	3,212,835	
고객센터수수료	3,437,312	(67,046)	3,370,267	
주택용계량기교체비	51,903	-	51,903	
대손상각비	6,274	-	6,274	
잡비	24,871	475	25,347	
(B) 영업외비용	102,000	(20,000)	82,000	
기부금	102,000	(20,000)	82,000	
(C) 영업외수익	50,000	-	50,000	
(D) 법인세비용	1,096,022	(9,939)	1,086,083	
(E) 적정원가	22,343,827	(549,899)	21,793,928	A+B-C+D

- 전남도시가스,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21,195,805	(519,960)	20,675,845	
(B) 감가상각비	4,863,482	14,368	4,877,850	
(C) 대손상각	6,274	-	6,274	
(D) 무형자산상각비	193,921	-	193,921	
(E) 퇴직급여	385,836	(19,584)	366,252	
(F) 소계	5,449,512	(5,216)	5,444,297	(B+C+D+E)
(G) 퇴직급여현금지출액	23,540	342,712	366,252	
(H) 현금지출경비	15,769,832	(172,032)	15,597,800	(A-F+G)
(I) 운전자금	2,628,305	(28,672)	2,599,633	(H)x2/12
(J) 유형자산	49,752,908	(435,364)	49,317,544	
(K) 무형자산	612,805	-	612,805	
(L) 임차보증금	342,127	-	342,127	
(M) 요금기저	53,336,145	(464,036)	52,872,109	I+J+K+L
(N) 적정투자보수율	7.48%	-	7.48%	
(O) 적정투자보수	3,989,310	(34,708)	3,954,602	MXN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2,684,000	-	12,684,000	
(B) 당기순이익누계	78,513,298	-	78,513,298	
(C) 배당금지급액누계	45,432,158	-	45,432,158	
(D) 자기자본	45,765,139	-	45,765,139	A+B-C
(E) 타인자본적수	43,920,000	-	43,920,000	
(F) 월평균잔액	3,660,000	-	3,660,000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57%	-	4.57%	
(H) 이자비용	155,508	-	155,508	
(I) 타인자본보수율	3.33%	-	3.33%	H/Fx(1-세 후법인세율)

(J) 가중평균보수율	4.48%	-	4.48%	$[(D \times G) + (F \times I)] / (D + F)$
(K) 미공급지역가산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7.48%	-	7.48%	J+K

- 해양에너지

1. 적정원가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해양에너지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12,254,401	(646,684)	11,607,717	
급여	1,563,398	(29,539)	1,533,859	
상여금	1,370,049	(192,200)	1,177,849	
제수당	38,639	(2,350)	36,289	
퇴직급여	303,209	(5,729)	297,480	
감가상각비	3,665,831	(2,762)	3,663,069	
무형자산상각비	141,871	(16,555)	125,316	
복리후생비	623,802	(68,544)	555,258	
여비교통비	107,719	(19,378)	88,341	
차량유지비	252,316	(576)	251,740	
자재비	92,909	(12,183)	80,726	
고객센터수수료	2,213,233	(124,000)	2,089,233	
외주용역비	289,966	(21,257)	268,709	
지급임차료	119,577	(70,113)	49,464	
수도광열비	18,520	(6,092)	12,428	
통신비	93,630	5,712	99,342	
문구인쇄비	27,789	(3,984)	23,805	
사무용품비	2,927	(97)	2,830	
광고선전비	48,955	(12,910)	36,045	
제세금	428,495	(8,120)	420,375	
보험료	8,503	-	8,503	
제수수료	702,235	(50,778)	651,457	
교육훈련비	16,579	(5,228)	11,351	
주택용계량기교체비	123,864	-	123,864	
대손상각비	385	-	385	
(B) 영업외비용	25,000	-	25,000	
(C) 영업외수익	-	-	-	
(D) 법인세비용	1,095,882	(5,140)	1,090,742	
(E) 적정원가	13,375,283	(651,824)	12,723,459	A+B-C+D

- 해양에너지, 계속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해양에너지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12,254,401	(646,684)	11,607,717	
(B) 감가상각비	3,665,831	(2,762)	3,663,069	
(C) 대손상각	385	-	385	
(D) 무형자산상각비	141,871	(16,555)	125,316	
(E) 퇴직급여	303,209	(5,729)	297,480	
(F) 소계	4,111,296	(25,046)	4,086,249	(B+C+D+E)
(G) 퇴직급여현금지출액	303,209	(5,729)	297,480	
(H) 현금지출경비	8,446,314	(627,366)	7,818,948	(A-F+G)
(I) 운전자금	1,407,719	(104,561)	1,303,158	(H)x2/12
(J) 유형자산	49,525,054	(78,150)	49,446,905	
(K) 무형자산	617,559	(57,944)	559,615	
(L) 임차보증금	116,000	-	116,000	
(M) 요금기저	51,666,333	(240,655)	51,425,678	I+J+K+L
(N) 적정투자보수율	7.57%	-	7.57%	
(O) 적정투자보수	3,912,502	(18,224)	3,894,278	MXN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해양에너지

(단위: 천원)

과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3,066,667	-	3,066,667	
(B) 당기순이익누계	299,897,331	-	299,897,331	
(C) 배당금지급액누계	180,690,000	-	180,690,000	
(D) 자기자본	122,273,998	-	122,273,998	A+B-C
(E) 타인자본적수	-	-	-	
(F) 월평균잔액	-	-	-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57%	-	4.57%	
(H) 이자비용	-	-	-	
(I) 타인자본보수율	-	-	-	H/Fx(1-세 후법인세율)

(J) 가중평균보수율	4.57%	-	4.57%	$[(D \times G) + (F \times I)] / (D + F)$
(K) 미공급지역가산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7.57%	-	7.57%	J+K